###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5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이인영・이기헌・박홍배

박상혁 • 한정애 • 이정문

강준현 • 전진숙 • 김영진

백승아 • 이연희 • 김성회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 법률 제 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2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	
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	
(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	
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u>다만,</u>	<u>&lt;단서</u>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	<u>삭제&gt;</u> 이 경우 재화의 공급
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
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	한 행위, 대출의 제공・알선
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	•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
다.<후단 신설>	함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